

수원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2가단510881(본소), 2024가단553424(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부양료 구상금(이송됨)]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범석

피고C

변론 종결2024. 11. 12.

판결 선고2024.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3. 12.부터 202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 5.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와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용인구 수지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3. 24.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하였고, 2016. 7. 1. 피고에게 2016. 6.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71,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1)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 한 후(민법 제113조 제1항),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적 상속재산액 및 상속채무액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피고의 수증재산 가) 피고의 수증재산의 범위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먼저,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 전부(현금 약 1억 원)를 부모에게 제공하여 망인이 당시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I 소재 단독주택을 보존할 수 있었고, 망인이 위 단독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21. 10.경에서야 모친인 E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비용, 요양비용 등은 망인 및 E와 관련하여 위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위 비용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과 E가 노령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간병비라고 주장하는 금원들이 송금된 사정은 보이지만(을 제7, 15호증) 이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22. 2. 15.부터의 내역인 점,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재산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모, 자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또한, 망인의 자녀인 피고가 망인과 배우자 E를 부양해왔으므로 기여분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14 등 결정) 현행 법률상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가정적으로 나아가 판단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망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나. 유류분 비율(B)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9 (= 상속분 2/9 \times 1/2)$ 이다.

다.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C)

- 1)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없다.
- 2)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2007. 10. 24. 3,000,000원, 2008. 2. 25. 2,000,000원, 2008. 8. 13. 1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 1)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액은 각 0원이다.
- 2) 한편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방세(재산세 등)를 납부하고 망인의 장례비도 단독으로 부담하였으므로 그에 지출된 비용들과 위 부동산 매각 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여세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자신의 채무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장례비용,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유류분부족액 $[(A \times B) - C - D]$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9 지분이 된다.

4.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범위

가. 유류분 반환의 방법

-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칙대로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가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2. 선고 2022다203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가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유류분반환의 범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7. 12. 기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평수의 J시세가 640,000,000원인 사실²⁾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가액반환 부분은 71,110,000원(= 640,000,000원 × 유류분 1/9,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천원이하 절삭)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8년간 망인과 배우자 E를 홀로 봉양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E를 홀로 봉양하고 있는바, 2009. 10. 이후 단 한 번도 망인을 찾아오지 않고 부양하지도 아니한 원고들이 약 8년 이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사전증여를 문제 삼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자신이 망인과 E를 부양하면서 합계 223,573,656원을 지출하였는바, 공동부양의무가 있는 원고들은 그 1/3에 해당하는 70,704,512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유류분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3)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양비용에는 증여세 등 세금과 보험, 주유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망인과 E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과 E가 노령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22. 2. 15.경부터 E의 요양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E의 상속분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점,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지출한 부양료 중 원고들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아직가정법원에서 민법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허정룡

1)수원가정법원 2024느단51929

2)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가액평가를 J시세에 따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3) 2023. 3. 7.자 준비서면 13쪽에 부양비용 상계 주장이 있음